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9024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90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4627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상고인 1. B

2.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46275 판결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기 전까지 이행의 최고나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려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1516, 1523, 88다카10029, 10036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들이 2015. 10. 5. 무렵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의 내용, 이 사건 종전 소송의 결과,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한 권리행사의 태양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은 2015. 10. 5. 무렵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11. 24. 해제되었고, 그 이후 피고 B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하여도 위 해제의 효력은 번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이행거절 의사표시의 철회, 적법한 계약이행의 의사표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조재연